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홍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53

발의연월일 : 2026. 8. 19.
발 의 의 원 : 전홍배 의원,
이상봉 의원, 전순애 의원

1. 제안이유

○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초래하는 위험수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단독주택을 포함한 일부 주민의 생활공간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군민의 생활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의한 반복 문구 정비 (안 제4조)

나. 지원 대상지를 정비하여 단독주택을 지원대상지에 포함 (안 제5조)

다. 위험수목 처리 선정에 따른 지원 결정 취소 조항 신설 (안 제1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위험수목 처리 수요조사”를 “수요조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위험수목 처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위험수목 처리 등을 위해 군수”를 “군수”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노유자(노인 및 어린이)시설”을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 한다.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제5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유실수, 조경수, 정원수, 특용수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가 된 수목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지원결정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2.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유자 간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가 곤란한 경우

3. 위험 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필수 : □ 단독주택 □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 노인 및 어린이 시설

<table>
<tr><td rowspan="2">신청인</td><td>성 명</td><td></td><td>생년월일</td><td colspan="4">(남/여)</td></tr>
<tr><td>주 소
(건물명)</td><td colspan="5">(전화:)</td></tr>
<tr><td rowspan="5">신청

사항</td><td>위 치</td><td colspan="5">신청인 주소와 같음.</td></tr>
<tr><td>위험수목
현 황</td><td>수종</td><td></td><td>규격</td><td></td><td>수량</td><td>주
주
주</td></tr>
<tr><td rowspan="2">정 비
방 법</td><td>제거</td><td>수종</td><td></td><td>규격</td><td></td><td>수량</td><td>주
주
주</td></tr>
<tr><td>전지</td><td>수종</td><td></td><td>규격</td><td></td><td>수량</td><td>주
주
주</td></tr>
<tr><td>정 비 사 유</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대체수목 식재계획</td><td colspan="5">- 식재수종 :
- 수목규격 :
- 식재수량 :
- 식재(예정)일 :</td></tr>
</table>

※“대체수목 식재계획”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 대체수목 식재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42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주변 위험수목에 대하여 태풍 및 강풍 시 재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다세대 연립주택 세대원 동의서 1부.
3. 대체수목 식재 서약서 1부(「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계획 등) ① (생 략)	제4조(지원계획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위험수목 처리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	3. 수요조사----------
4. 위험수목 처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4. 필요한 ----------
5.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 군수----------
제5조(지원 대상지)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한다.	제5조(지원 대상지) ① ----------.
〈신 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20세대 미만인 곳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

호에 따른 노유자(노인 및 어린이)시설	호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 시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유실수, 조경수, 정원수, 특용수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가 된 수목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지원결정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2.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유자 간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가 곤란한 경우 3. 위험 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 제11조 (생 략)	제11조 · 제12조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
[별표 1호 서식]	[별표 1호 서식]
생활주면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생활주면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제8조제1항 관련)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필수 : □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 노유자시설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건물명)	(전화:)						
신청 사항	위 치	신청인 주소와 같음.						
	위험수목 현 황	수종		규격		수량	주 주 주	
	정비 방법 제거	수종		규격		수량	주 주 주	
	정비 방법 전지	수종		규격		수량	주 주 주	
	정비사유							
대체수목 식재계획		- 식재수종 : - 수목규격 : - 식재수량 : - 식재(예정)일 :						

※"대체수목 식재계획"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 대체수목 식재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42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주변 위험수목에 대하여 태풍 및 강풍 시 재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다세대 연립주택 세대원 동의서 1부.
3. 대체수목 식재 서약서 1부(「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제1항 관련)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필수 : □ 단독주택 □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 노인 및 어린이 시설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건물명)	(전화:)						
신청 사항	위 치	신청인 주소와 같음.						
	위험수목 현 황	수종		규격		수량	주 주 주	
	정비 방법 제거	수종		규격		수량	주 주 주	
	정비 방법 전지	수종		규격		수량	주 주 주	
	정비사유							
대체수목 식재계획		- 식재수종 : - 수목규격 : - 식재수량 : - 식재(예정)일 :						

※"대체수목 식재계획"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 대체수목 식재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42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주변 위험수목에 대하여 태풍 및 강풍 시 재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다세대 연립주택 세대원 동의서 1부.
3. 대체수목 식재 서약서 1부(「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공동주택관리법」[시행 2026. 6. 3.] [법률 제21166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3.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4.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8.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9.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주택관리사보”란 제6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12. “주택관리사”란 제67조제2항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13. “주택관리사등”이란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를 말한다.

14. “주택관리업”이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으로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業)을 말한다.

15. “주택관리업자”란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로서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6. 삭제 <2016. 1. 19.>

17. 삭제 <2016. 1. 19.>

18. “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장기계획을 말한다.

19.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0. “임대사업자”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21. “임차인대표회의”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건축법」[시행 2026. 2. 27.] [법률 제21035호, 2025. 8. 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냉방·소화(消火)·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결합건축”이란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의2. “제조업자”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 등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12의3. “유통업자”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판매하거나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사람

을 말한다.

13.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14.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15.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 공사관리 ·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6. “공사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6의2. “건축물의 유지 · 관리”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 · 구조 · 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17. “관계전문기술자”란 건축물의 구조 ·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18.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9.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20. “실내건축”이란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1. “부속구조물”이란 건축물의 안전 · 기능 · 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慰樂)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23. 교정(矯正)시설

24. 국방 · 군사시설

25. 방송통신시설

26. 발전시설

27. 묘지 관련 시설

28. 관광 휴게시설

2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주택법」[시행 2026. 8. 4.] [법률 제21323호, 2026. 2. 3., 일부개정]

제49조(사용검사 등) ①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이하 “분할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이하 “동별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 · 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사용승인 ·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2.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정

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면 사용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다.

④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초래하는 위험수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단독주택을 포함한 일부 주민의 생활공간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비용 발생이 예상됨(안 제5조)
-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따른 대형 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태풍, 강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처리 지원을 위한 비용 발생이 예상됨 (안 제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생활주변 위험수목 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이를 용역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주관 부서의 실태조사 수립이 필요하며 민원 비용 발생에 따른 구체적인 예산을 산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음.
- 본 조례 개정안은 달성군 내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초래하는 위험수목에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단독주택 대상지 추가에 따른 민원 대응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따라서 본 조례안의 개정에 예상되는 비용은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예상됨.

작 성 자			
소 속 및 직 위	달 성 군 의 회 의 원	성 명 (연 락 처)	전 홍 배 (☎ 2058)